

2018년 10차 이주민분과 회의록

일 시	2018년 10월 22일(월) 16:00 ~ 17:20					
장 소	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중회의실					
참석자(총6명) 6/14 공(0/2) 민(6/12)	성 명	확인	성 명	확인	성 명	확인
	이재숙(공공분과장)	X	김범수	X	고정미	X
	김민정(민간분과장)	O	송경순	O	손녕희	O
	이은희(총무)	O	엄현희	X	전정준	X
	김민정	O	이현우	X	이규일	X
김윤진	O	정지영	X			
회의주제 및 안건	1. 인사 및 공유 1) 신규위원 위촉 및 인사 2) 전차회의 결과 공유 2. 안건 논의 1)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1차 모니터링 3. 기 타 1) 기관 행사 및 전달사항 2) 차기회의 일정					

회의 결과

1. 인사 및 공유

- 1) 신규위원 위촉 및 인사
 -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왕그나 대표
- 2) 전차회의 결과
 - 이견 없음

2. 안건 논의

1)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

- ※ 별첨자료1 참고
- ※ 기타의견

①10-1 사업의 경우 통합지침(예정)을 참고해야 하겠으나 사회보장법상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국적자는 소득 책정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증빙서류와 지급기준이 까다로운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례가 소수일 수 있어 우려됨. 사례회의 등의 절차로 같음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,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사업 취지에 맞는 긴급사례 발굴 및 선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. 통합지침에 대해서는 추후 민·관 분과장과 간사가 함께 소통하도록 함

②10-6 사업의 수행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, 담당자 재량으로 참여자 모집하고 있으며 방법은 카카오토티, 기관 내 홍보 등을 통해 방문 접수로 이루어지고 있음. 1순위는 센터에 가입된 회원인 것으로 내부 규정 수립함. 이에 대한 분과 위원들의 의견은 합리적인 기

회의 결과

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대안으로 뽑기, 추천, 경제적 기준 및 기존 참여 여부, 국가 비율 등을 제시함. 선착순보다는 참여자 중심으로 운영하여 사업 취지에 맞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

3. 기 타

1) 기관 행사 및 전달사항 공유

- 11월 회의안건 : 2018년 분과 운영, 활동 평가 /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2차 모니터링
- 협의체 정책교육 및 휴먼복지포럼 일정 안내
-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: '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' 우분트 in 수원 행사
10.28.(일) 11:00 고등동 차이나타운

2) 차기회의 일정

- 일 시 : 2018. 11. 14.(수) 16:00
- 장 소 : 미정

회의사진



※ 별첨자료1. 이주민분과 2019년 시행계획 수립 1차 모니터링

연번	사업번호	구분	사업명	세부사업	담당부서	담당팀	담당자	모니터링 의견
1	10-1	공약	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	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	여성정책과	다문화팀	신승희	-사업 수행 시 긴급지원 가능 대상범위 및 증빙서류 등의 통합지침 필요. 추가 정보 요청 -외국국적자의 경우 행정서류로 입증할 수 없는 사례들이 많아 사례회의 등의 절차로 같음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안 제시할 것 건의 -4개년 계획대로 성과지표, 측정산식 변경(수정불가)
2	10-2	지속보완	다(多)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	다(多)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	여성정책과	다문화팀	현은미	-의견 없음
3	10-3	신규	이주민 건강·의료지원 서비스 홍보 및 인식 확대	이주민 건강·의료지원 서비스 홍보 및 인식 확대	여성정책과	다문화팀	현은미	-의견 없음
					장안구보건소	보건기획팀	김범수	
4	10-4	신규	이주민 가족 자녀 한국생활정착을 위한 초기상담 지원 사업	이주민 가족 자녀 한국생활정착을 위한 초기상담 지원 사업	여성정책과	다문화팀	현은미	-의견 없음
5	10-5	신규	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다(多)어울림 행사	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다(多)어울림 행사	여성정책과	다문화팀	현은미	-의견 없음
6	10-6	신규	다문화가족 육성지원 프로그램	다문화가족 육성지원 프로그램	여성정책과	다문화팀	조화신	-담당자 변경 및 4개년 계획에 맞춰 성과지표, 측정산식 변경(수정불가) -참여자 중심으로 중복 지원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